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훈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4546
----------	-------

발의연월일 : 2025. 11. 25.

발 의 자 : 박정훈·김승수·배현진
진종오·박덕흠·정성국
김미애·이성권·한지아
김형동 의원(10인)

제안이유

본 개정안은 대중형 골프장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행정의 효율성 및 지방분권의 취지를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현행법은 국민체육진흥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금액보다 낮은 금액의 이용료를 책정하고 골프장 이용에 관한 표준약관을 사용하는 비회원제 골프장을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정부는 대중형 골프장에 대해 세제 혜택 등 필요한 지원을 하고 있음.

그런데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된 골프장이 세제 혜택 등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약취소 시 위약금 부과, 이용 중단 시 환급 조항이 제대로 준수되지 않는 등 표준약관보다 불리한 약관을 적용하는 경우가 있어 소비자들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음. 현행법에는 이를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일부 사업자는 세제 혜택만 누리며 의무는 외면하는 불공정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는 입법의

미비라고 할 수 있음.

이에 개정안은 입법의 미비를 보완해, 위반 행위에 대해 지정 취소,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 제재를 내릴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함. 또한, 대중형 골프장 지정 및 제재 권한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서 시·도지사로 이양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신속한 제도 운영을 가능케 함.

아울러, 등록 체육시설업(골프장업, 스키장업, 자동차 경주장업)을 하려는 자가 운동시설 이외 고객 편의를 위한 식음료 시설, 목욕시설, 매점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인허가의제제도를 도입함. 이 제도를 통해 체육시설업 등록을 승인할 때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를 거친 사항에 대해서는 부대시설영업의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행정절차를 대폭 단축하고, 사업자의 시간과 비용 부담을 줄여 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함.

주요내용

가. 대중형 골프장 지정 권한을 당초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서 시·도지사로 이양하고, 대중형 골프장 지정 요건을 명문화함(안 제10조의 2제2항).

나. 대중형 골프장 지정을 받은 자가 지정 요건을 위반한 경우 시·도지사는 사업자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게 하고, 사업자가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지정 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0조제1호, 제32조제3항제2호 및 제40조제1항제7호 신설).

다. 등록 체육시설업을 운영하려는 자가 목욕탕, 식당과 같은 시설을 함께 운영하려는 경우 인허가 의제를 통해 행정절차를 간소화함(안 제19조의2 신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2항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을 “시·도지사는”으로, “이용료 등”을 “다음 각 호”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골프 대중화 취지에 적합한 이용료 요건을 충족할 것
2. 골프 카트, 경기보조원 등 부대 서비스의 이용 여부에 대하여 소비자에게 선택권을 보장할 것
3. 예약·취소, 기상조건에 따른 경기운영 및 환불에 관해 소비자 권익을 보장할 것
4. 그 밖의 대통령령에 따른 골프대중화에 기여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할 것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체육시설업 등록시 인허가 등의 의제) ① 시·도지사는 제19조에 따라 체육시설업 등록을 승인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를 거친 후에는 다음 각 호의 영업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따른 신고 또는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1.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 따른 목욕장업의 신고

2.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의 허가 또는 신고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별도 협의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인허가 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

제30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9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이용료 등의 요건을 위반한 때

제32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제2항 및 제3항”으로 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지정된 대중형 골프장을 운영하는 체육시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30조제1호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33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32조제3항에 따른 지정취소

제40조제1항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제30조제1호에 따른 시정명령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의2(골프장업의 세부 종류)	제10조의2(골프장업의 세부 종류)
① (생 략)	① (현행과 같음)
② <u>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u> 국민	② <u>시·도지사는</u> -----
체육진흥을 위하여 제1항제2호	-----
에 따른 비회원제 골프장(이하	-----
“비회원제 골프장”이라 한다)	-----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
에 따라 <u>이용료 등의</u> 요건을 충	----- <u>다음 각 호</u> -----
족하는 골프장을 대중형 골프장	-----
으로 지정할 수 있다.	-----.
<u><신 설></u>	<u>1. 골프 대중화 취지에 적합한</u>
	<u>이용료 요건을 충족할 것</u>
<u><신 설></u>	<u>2. 골프 카트, 경기보조원 등 부</u>
	<u>대 서비스의 이용 여부에 대</u>
	<u>하여 소비자에게 선택권을 보</u>
	<u>장할 것</u>
<u><신 설></u>	<u>3. 예약·취소, 기상조건에 따른</u>
	<u>경기운영 및 환불에 관해 소</u>
	<u>비자 권익을 보장할 것</u>
<u><신 설></u>	<u>4. 그 밖의 대통령령에 따른 골</u>
	<u>프대중화에 기여할 수 있는</u>
	<u>요건을 충족할 것</u>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u><신 설></u>	<u>제19조의2(체육시설업 등록시 인</u>

제30조(시정명령)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체육시설업자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u>허가 등의 의제) ① 시·도지사는 제19조에 따라 체육시설업 등록을 승인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를 거친 후에는 다음 각 호의 영업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따른 신고 또는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u> <u>1.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 따른 목욕장업의 신고</u> <u>2.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의 허가 또는 신고</u> <u>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별도 협의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u> <u>③ 제1항에 따른 인허가 등의 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u> 제30조(시정명령) ----- ----- ----- -----
---	---

하나에 해당하면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신 설>

1. ~ 8. (생 략)

제32조(등록취소 등) ①·② (생
략)

<신 설>

③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
부 기준은 그 처분 사유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문화체육관
광부령으로 정한다.

제33조(청문) 시·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
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

1.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이용
료 등의 요건을 위반한 때
2. ~ 9. (현행 제1호부터 제8호
까지와 같음)

제32조(등록취소 등) ①·② (현
행과 같음)

③ 시·도지사는 제10조의2제2
항에 따라 지정된 대중형 골프
장을 운영하는 체육시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
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30조제1호에 따른 시정명
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
니한 경우

④ 제2항 및 제3항-----

-----.

제33조(청문) -----

-----.

1. ~ 3. (생략) <u><신설></u> 제40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6. (생략) <u><신설></u> <u>7.</u> (생략) ②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u>4. 제32조제3항에 따른 지정취소</u> 제40조(과태료) ①----- ----- ----- ----. 1. ~ 6. (현행과 같음) <u>7. 제30조제1호에 따른 시정명령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u> <u>8.</u> (현행 제7호와 같음) ② (현행과 같음)
---	---